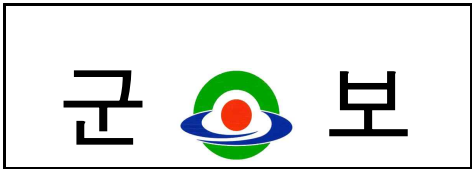
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509호 2024. 2. 22.(목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고 시

○하천점용허가 고시(예천군 고시 제2024-28호)

공 고

○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24-395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(전화 650-6064)

하천점용허가 고시

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법 제33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4년 2월 22일

예 천 군 수 (인)



구 분	하천점용허가
하 천 명	한천(지방하천)
점 용 자 주 소	예천군수(문화관광과장)
위 치	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310-1번지
점용면적 (허가량)	7,735㎡
점용목적	토지의 점용
사업개요	달집 태우기 행사를 위한 토지의 일시점용
점용기간	2024년 2월 24일 (1일)

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예천군 주차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예천군 조례·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2월 22일

예 천



1. 조례명 :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- 공영주차장 이용자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「예천군 주차장 조례」 별표 1에 시간제 주차요금 기준을 변경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예천군 공영주차장 요금 기준 시간제 주차요금 변경(안 별표 1)

- 최초 무료 시간 : 최초 30분 이내 무료 → 최초 1시간 이내 무료
- 월정기주차요금 : 월 75,000원 → 월 70,000원

4. 개정조례안 : 붙임과 같음

5. 의견제출

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 : 건설교통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/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방문 제출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ehoiz37012@korea.kr

2) 주소 :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, 예천군청 건설교통과

3) 팩스 : 054-650-6339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건설교통과(전화 : 054-650-6253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(www.ycg.kr) 『열린군정-군정소식-입법예고』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 : 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정(안)	수 정(안)	수정사유

예천군 조례 제 호

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1】

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

1. 시간제 주차요금

1회 주차요금(1구획당)		월정기주차요금표
최초 1시간 이내	1시간 초과 시 30분 단위	
무료	500원	

예시) 1시간 초과 ~ 1시간 30분: 500원, 1시간 30분 초과 ~ 2시간: 1,000원

비 고

1.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된다.
2. 1구획은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 수에 따라 징수한다.
3. 군수는 당해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.
4. 월정기주차요금표는 노외주차장에 한하되,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장 설치자가 따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